

# 2022 - 2학기 휴학 · 복학 신청 및 제적 안내

## 1. 휴학

### 가. 신청 기간

신청 기간	휴학 신청 자격	등록금 반환
8.1. (월) 9:00 ~ 9.14. (수) 17:00	등록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휴학 신청 가능	전액 반환
9.15. (목) 9:00 ~ 11.14. (월) 17:00	등록금 납부자만 신청 가능 <b>/일반휴학신청 마감</b>	9.30. (금)까지 5/6 반환
		10.31. (월)까지 2/3 반환
11.15. (화) 9:00 ~ 12.1. (목) 17:00	질병·출산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휴학 신청 가능	11.29. (화)까지 1/2 반환

### 나. 휴학 신청 시 유의사항

- 1) 신입생, 재입학생은 입학 및 재입학 후 첫 1학기 동안 휴학할 수 없음. 단, 군입대, 진단서를 첨부한 건강 혹은 출산·육아의 사유(출산 휴학 참조)로 휴학하는 경우는 허가함.
- 2) 장학금 수혜자는 소속 학과 또는 대학을 통해 장학금 취소(반환) 후 휴학 신청 가능  
(장학금 문의 : 2123-4187,4188)  
※ BK21플러스 사업 장학금 수혜자는 휴학 신청 전 BK21플러스 사업 담당자와 상의 하기 바람(BK21 장학금 문의 : 2123-7188)
- 3) 휴학한 학기에는 자격시험 결과 보고 및 연구계획서 제출이 불가함.  
(관련 문의 : 2123-4187,4188)
- 4)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는 경우 등록금 반환처리를 위해 학사포탈에 본인 계좌를 등록해야 함. (등록금 문의 : 2123-4187,4188)
- 5) 휴학 신청 전 반드시 지도교수에게 승인을 받기 바람
- 6) 학·연·산 학생은 재직 기관의 휴학 승인 공문을 제출해야 휴학 승인 가능
- 7) 계약학과 학생은 소속 학과를 통해 대학원으로 휴학 요청 공문을 발송해야 휴학 승인 가능  
※ 재교육형은 협약에 따라 재직 기관의 휴학 승인 공문이 증빙으로 첨부되어야 함.

### 다. 신청 및 승인 절차

#### 1) 신청 절차:

연세포탈서비스⇒학사정보시스템⇒학사관리⇒학적⇒[휴복학]⇒휴학종류선택⇒신청

※ 출산, 입대휴학은 증빙서류 업로드

#### 2) 승인 확인 : 연세포탈서비스⇒학사정보시스템⇒학사관리⇒학적⇒성적조회⇒재학구분

#### 3) 학사포탈로 휴학 신청이 안 되는 다음의 경우는 휴학원서 작성 후 정보대학원

행정팀(새천년관 412호)으로 방문 제출 혹은 이메일(gsi@yonsei.ac.kr)로 제출하기 바람

#### 가) 질병, 창업 휴학

※ '라'항의 휴학 안내 및 제출서류를 반드시 확인하고 절차대로 신청하기 바람

#### 나) 해당 학기 복학 승인을 받은 자가 복학신청기간 이후 다시 휴학하려는 경우

#### 다) 각 과정의 마지막 학기에 해당하는 경우(석사 8학기, 박사 14학기, 통합 16학기)

라. 휴학 및 제출서류 안내

1) 일반휴학

- 가) 휴학은 재적 중에 석사과정은 2년, 박사 및 통합과정은 3년 안에서 횟수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음. 단, 최소 1회 휴학 기간은 1학기임.
- 나) 휴학 기간은 복학 신청이 없는 한, 휴학 가능 기간 내에서 자동으로 연장됨.
- 다) 휴학 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으면 휴학만료제적 처리됨.
- 라) 휴학 기간은 재학연한(석사 4년, 박사 7년, 통합 8년)에 산입하지 않음.
- 마) 신입생, 재입학생은 입학 및 재입학 후 첫 1학기 동안 휴학할 수 없음. 단, 군입대, 진단서를 첨부한 건강 혹은 출산·육아의 사유(출산휴학 참조)로 휴학하는 경우는 허가함.

2) 입대휴학

- 가) 군복무 기간만 휴학으로 인정되며, 복무 만료 후 복학 또는 일반휴학을 신청하여야 함
- 나) 제출서류: 복무확인서 또는 입영통지서 등
  - ※ 복무시작 7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, 휴학 신청 후 반드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

3) 출산휴학

- 가) 임신, 출산 또는 만 8세 이하(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함) 자녀의 육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휴학 연한(1년)에 산입하지 않음.
- 나) 출산 휴학 가능 기간 1년 소진 후, 일반휴학 또는 복학 신청을 해야 함.
- 다) 제출서류: 임부는 임신진단서, 부모 학생은 출생증명서 등 출생 및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(최근 6개월 이내 증명서)

4) 질병 휴학

- 가) 일반 휴학기간으로 산입됨
- 나) 제출서류: 일반휴학원서, 본 대학교 의료원이나 그에 준하는 (보건복지부 지정) 상급 종합병원 이상에서 발급된 전문의 진단서, 건강센터 확인서를 대학원 교학팀으로 제출 (건강센터 확인서는 진단서를 지참하고 건강센터(학생회관 2층, 02-2123-3346)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음)

5) 창업·창업준비 휴학

- 가) 창업 또는 창업준비를 사유로 하는 휴학은 통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음.
- 나) 1회 신청 시에 두 학기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으며, 창업준비 휴학은 1회만 신청할 수 있음.
- 다) 절차: 창업지원단 신청 → 창업지원단 승인 → 대학원 창업 휴학 신청
- 라) 창업휴학 신청 공고는 창업지원단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일반휴학과 신청 기간이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
  - 홈페이지(22-2학기 창업휴학), 문의처 02-2123-4866

## 2. 복학

### 가. 신청 기간

차수	학생 복학 신청 기간	학과 승인	수강 신청 기간	등록 기간
1차	8.1. (월) 09:00 ~ 8.11. (목) 17:00	8.12. (금)	8.12. (금) ~	8.19. (금) ~
2차	8.13. (토) 09:00 ~ 8.23. (화) 17:00	8.24. (수)	8.19. (금), 9.5. (월) ~	8.25. (목), 9.8. (목) ~
3차	8.29. (월) 09:00 ~ 9.4. (일) 17:00	9.5. (월)	9.7. (수)	9.14. (수)

<복학 시 유의사항>

- 위 기간 외에는 복학 신청 및 승인이 불가하오니 신청기간과 승인일을 숙지하여야 함.
- 외국인 학생은 복학 신청 후 여권 사본을 대학원 이메일(gsi@yonsei.ac.kr)로 제출

### 나. 복학신청 및 승인 절차

1) 신청방법: 연세포탈서비스⇒학사정보시스템⇒학사관리⇒학적⇒[휴복학]⇒복학신청

\* 입대휴학 후 복학하는 경우는 전역증빙(복무만료) 서류를 업로드해야 함

2) 복학 신청 제출서류

가) 입대휴학 후 복학하는 경우 전역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.

나) 학·연·산 학생은 재직 기관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

다) 계약학과 재교육형 학생은 재직 기관의 재직증명 서류들을 제출해야 함

3) 승인 확인방법 : 연세포탈서비스⇒학사정보시스템⇒학사관리⇒학적⇒성적조회⇒재학구분

4) 학사포탈로 복학 신청이 안 되는 다음의 경우는 복학원서 작성 후 정보대학원

행정팀(새천년관 412호)로 방문 제출 혹은 이메일(gsi@yonsei.ac.kr)로 제출하기 바람

가) 2학기 휴학 승인을 받은 자가 다시 복학하려는 경우

※ <http://gsi.yonsei.ac.kr> > 학사안내 > 서식다운로드 > 6-1 복학원서

### 다. 복학 취소

1) 복학 승인 받은 후 복학 취소를 원할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함

- 미등록자는 2022. 9. 4. (일)까지 '취소원'을 제출하는 경우에만 복학 취소 가능

- 복학 신청 기간이 지났거나 등록을 했을 경우, 복학 취소가 되지 않고, '휴학 신청'으로 처리 가능

<http://gsi.yonsei.ac.kr> > 학사안내 > 서식다운로드 > 5-1 휴학원서

※ 양식 작성하여 학과 승인을 받은 후 정보대학원 행정팀(새천년관 412호)으로 방문 제출 혹은 이메일(gsi@yonsei.ac.kr)로 제출하기 바람

## 3. 제적

가. 휴학만료제적: 정해진 휴학 기간이 끝난 후에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 처리됨.

나. 미등록제적: 재학생이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제적 처리됨.

다. 성적불량제적: 매 학기 성적의 평량평균이 2.00 미만일 경우에는 학사경고를 받게 되며, 학사경고를 총 2회 받으면 제적 처리됨.

라. 학기만료제적: 정해진 논문 제출 시한 내에 논문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제적 처리되며, 이 경우 재입학이 허용되지 않음.

각 학위별 논문제출 만료 시한: 석사과정 4년, 박사과정 7년, 석.박사통합과정 8년

- 1) 위 기간에 휴학 기간과 제적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.
  - 2) 수료요건이 충족된 자에 한하여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대학원장의 재가를 얻어 2년간 추가 연장 가능.
- 마. 징계에 의한 제적: 학생으로서 그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가 있을 때 징계에 의한 제적 처리되며, 이 경우 재입학이 허용되지 않음.
- ※ 모든 제적자는 등록금(입학금 포함)을 반환해 주지 않음.

▶원활한 학사안내를 위하여 학사포탈시스템의 연락처를 실제 연락 가능한 정보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▶학사포탈시스템(<http://portal.yonsei.ac.kr>)→학사정보시스템→로그인→학적→학생정보→기본정보수

##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